

고 발 장

- 고발인 1. 김 형 완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2. 김 성 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위 고발인 1.2의 주소

전화 [REDACTED] 팩스 [REDACTED]

3. 박 경 자 (주부)
4. 심 병 호 (시민)
5. 전 재 덕 (시민)
6. 이 계 인 (자영업)

- 피의자 1. 전 영 배 (검찰직원)
2. 박 종 갑 (검찰직원)
3. 김 재 구 (검사)

위 피의자들 주소 : [REDACTED] 내

가혹행위 등

고발인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의 취지

고발인 1,2는 참여연대 간사들이고 고발인 3내지 6은 참여연대 회원들입니다. 참여연대는 그 산하에 사법감시센터를 두고 <사법감시> 지 발간, 사법기능 모니터, 시민행동등을 통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사법정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창원지검에서 피의자들의 독직폭행사실을 접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는등 진상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보도내용이 모두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7월 2일자로 검찰총장에 가혹행위를 일삼은 피의자들의 정식 입건수사와 가혹행위의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을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거나 그에 근거하여 엄정한 징계와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명천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의자들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도 그에 항의하는 시보에게 “건방지다” “창원지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정치인으로 나가겠다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일과 같은 독직폭행은 사실상 창원지검을 포함하여 지방 단위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일로서 이를 엄정히 다루지 않는다면 다시 동일한 잘못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인들이 피의자들에게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고발 사실의 요지

피의자 전영배, 박종갑은 각 검사 입회서기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검사를 보조하는 자, 같은 김재구는 검사인 자인바,

가. 피의자 전영배는

1998. 6. 1. 14:00 경 창원시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208호 김재구 검사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수사중인 형사피의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해 검사를 보조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도중 동피해자가 기분나쁘게 대답한다는 등 이유로 손으로 동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동인의 등을 차서 바닥에 넘어 뜨리고, 이에 동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다시 동인은 구둣발로 10여 차례 짓밟아 동인은 폭행하고,

나. 피의자 박종갑은

(1) 같은 달 2. 22:30경 같은 곳에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형사피의자인 피해자 [REDACTED] (또는 [REDACTED]인지 분명하지 아니함)에 대해 검사를 보조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도중 동인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구타하고 구둣발로 동인을 짓밟는 한편 구두를 벗어들어 이로써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동인을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하고

(2) 같은 달 3. 13:00 정 같은 곳에서 적명불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형사피의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사([REDACTED])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는 아니함)에 대해 검사를 보조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도중 동인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과 구둣발로 수십회 구타하여 폭행하고,

다. 피의자 전영배, 박종갑은 공동하여

같은 달 4. 시간불상 야간에 창원시 소재 [REDACTED] 단란주점에서 사범연수생으로서 검찰실무를 수습중인 검사직무대리 피해자 [REDACTED] 등이 동 피의자들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적하며 사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전영배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피의자 박종갑은 피의자 [REDACTE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라. 피의자 김재구는 그 무렵 검사로서 자신을 보조하는 상피의자들에 대하여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기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회 반복되는 상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입니다.

3. 적용법조와 증거자료

가. 적용법조

피의자 전영배, 박종갑 : 각 형법 제 12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 2항, 제 1항, 형법 제 260조 제 1항, 제 30조, 제 37조, 제 38조

피의자 김재구 : 형법 제 125조, 제 32조, 제 122조, 제 37조, 제 38조

나. 증거자료

이상의 혐의사실은 그동안 언론보도내용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위 입회 수사관들과 담당검사의 방에서 시보로서 수습을 받고 있던 사법연수원생들이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목격하여 작성한 사건경위서 및 추가경위서등을 작성한 바 있고 이 경위서에 의하면 위 혐의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없는 사실을 들어 그러한 경위서를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스스로 문제된 피의자들 중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전근시키는등 인사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범죄 혐의를 부분적으로 자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고발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혐의사실이 진실이라면 이를 단순히 전보발령 정도로 인사조치하고 이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피의자의 신분이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함부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만들겠다는 새정부의 의지와 인권의 보편성을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한 김대중대통령의 의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들을 구속하여 수사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1998년 7월

위 고발인

김 형 완
김 성 태

대 검 찰 청 귀 증